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6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 백종헌 · 서천호 · 박정하

정희용 • 이헌승 • 박충권

김예지 • 김용태 • 김종양

김상욱 • 박준태 • 강대식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,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,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 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.

그러나,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 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

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(안 제11조제8항).

법률 제 호

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)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 | 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|
| 등) ① ~ ⑦ (생 략)      |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  |
|                     | 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  |
|                     | 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 |
|                     |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.     |